

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(여비지급) “의원이 의회의 회의(이하 “본회의”라 한다)또는 위원회 의결이나”  
를 “의회의 회의(이하 “본회의”라 한다)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  
원회의 의결이나”로 한다.

제5조(여비의 종류) “국내 여행을 할 때”를 “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 
와 국내 여행을 할 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 
다만, 제4조의 개정규정은 1992년도 첫 임시회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황	개 정 안
<p>제4조(여비지급) 의원이 의회의 회의(이하 "본회의"라 한다)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</p> <p>제5조(여비의 종류) ①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(철도운임, 선박운임, 항공운임, 자동차 운임), 현지교통비, 숙박비, 식비, 식탁료로 구분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4조(여비지급)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(이하"본회의"라 한다)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_____</p> <p>제5조(여비의 종류) ①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 _____</p> <p>_____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